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23. 5.



· 목차

I

지역 인구감소 현황

II

그간 정책의 한계

III

지방소멸 대응 정책

IV

고향사랑 기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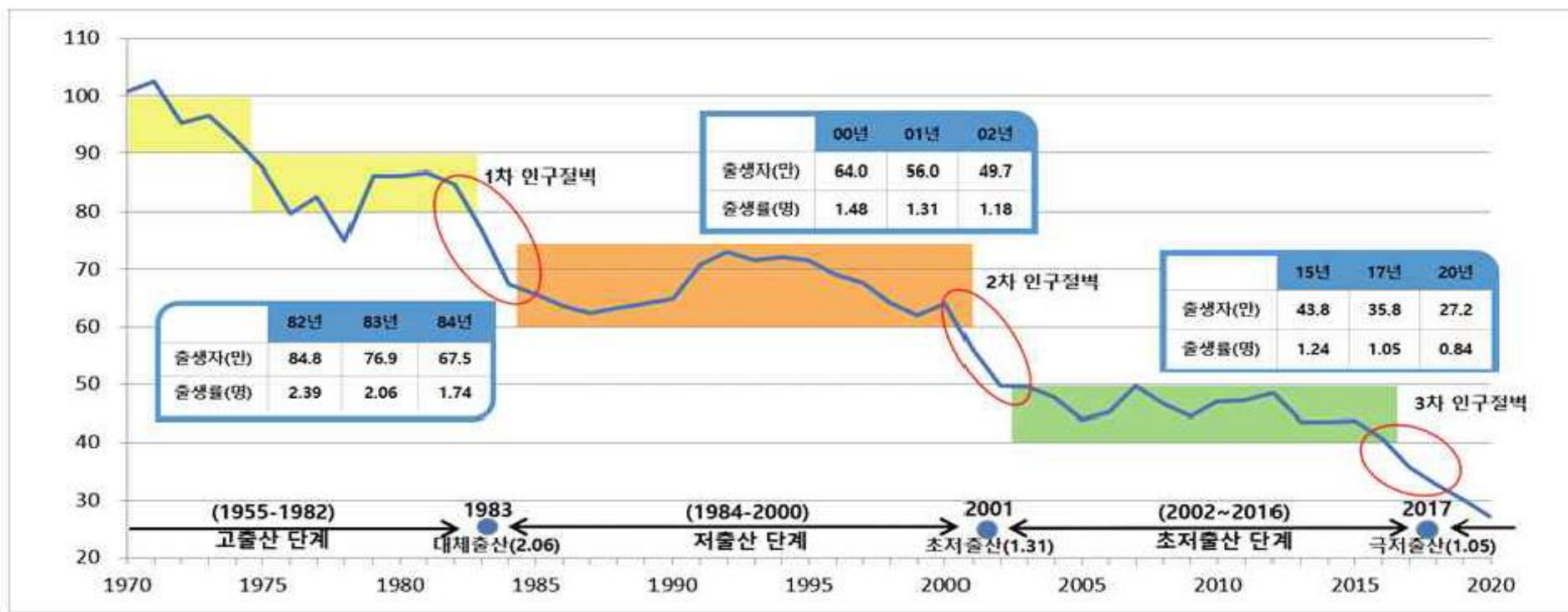
지역 인구감소 현황





저출산 및 국가 인구감소

- ❖ 1차 인구절벽(1982~1984년), 2차 인구절벽(2000~2002년), 3차 인구절벽(2015~2020년)
- ❖ 합계 출산율 : 1982년 2.39명 → 2020년 0.84명
- ❖ 출생자 : 1982년 84.8만명 → 2020년 27.2만명



출처: 서형수(20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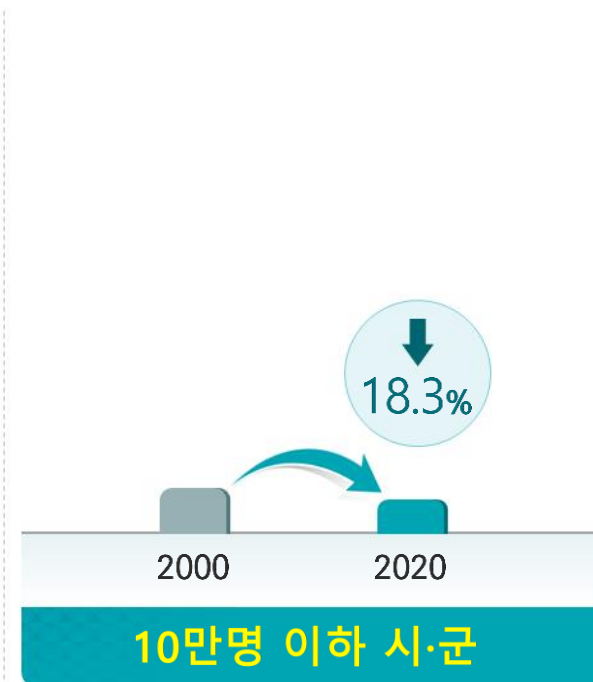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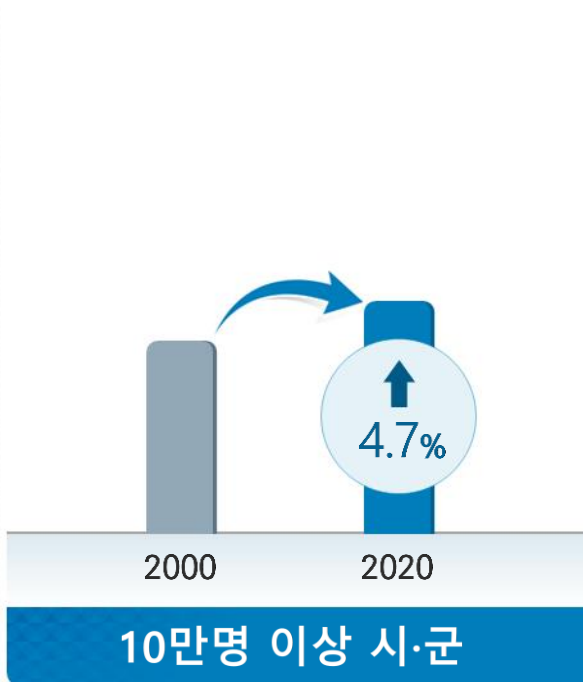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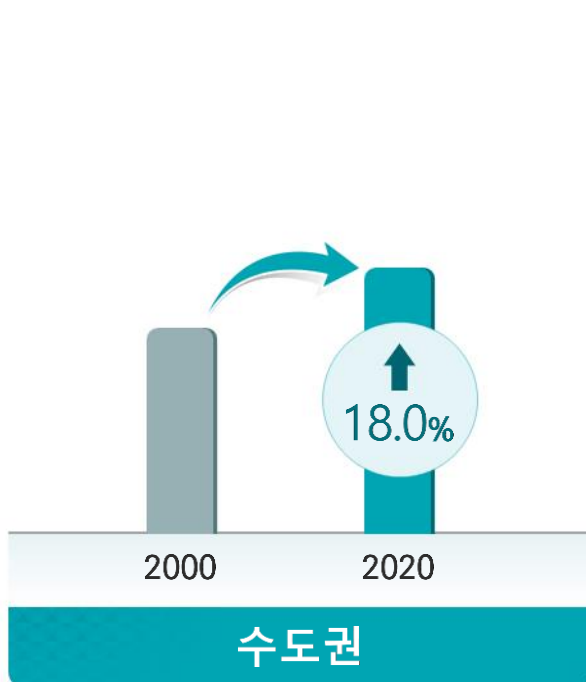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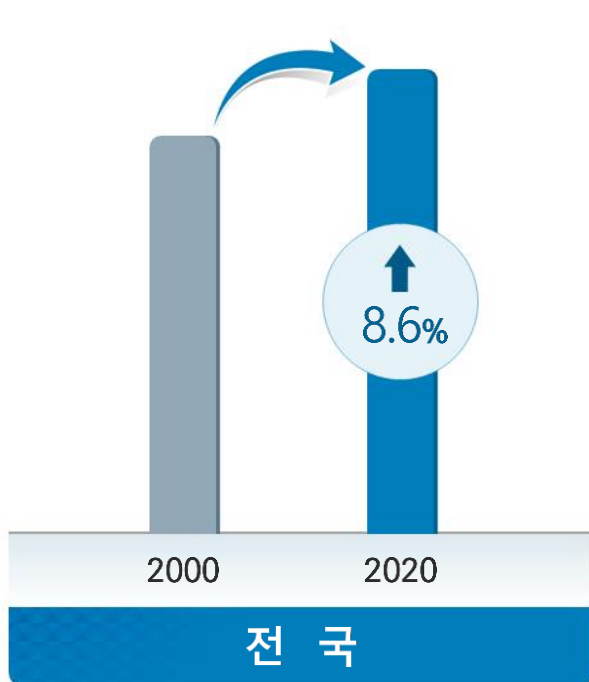
I 지역 인구감소 현황



지역 인구감소의 심화

지난 20년간
소규모 지역의 인구감소가 뚜렷
(통계청)

- ☑ 전국 시·군·구의 66%(151개)에서 인구 감소
- ☑ 인구정점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 시·군·구는 전국의 27% (60개)
- ☑ 수도권 인구 18% 증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인구 18% 감소





사회적 인구증감의 영향

국가 총 인구 감소는 자연적 증감인 반면
지역별 인구 증감은 사회적 증감에
더 큰 영향 받음



지역의 청년층 유출, 중장년층 유입 현상 지속

청년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중장년층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지역경제의 격차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50% 초과

수도권 (2019년 기준)

- ☑ 전국 GRDP의 52%
- ☑ 카드 사용액의 72%
- ☑ 1,000대기업 본사의 75%
- ☑ 전국 대비 가구소득의 54.6%
- ☑ 지역총소득의 55.6%
- ☑ 종합소득세의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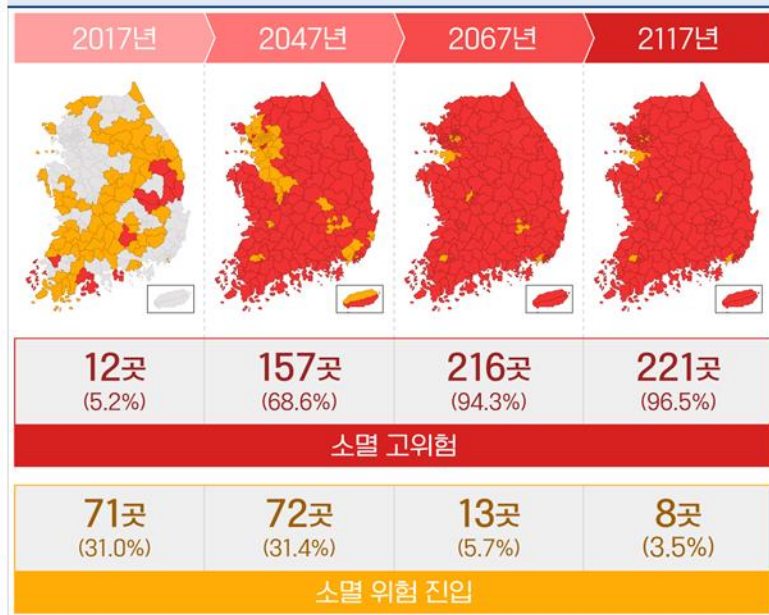




향후 인구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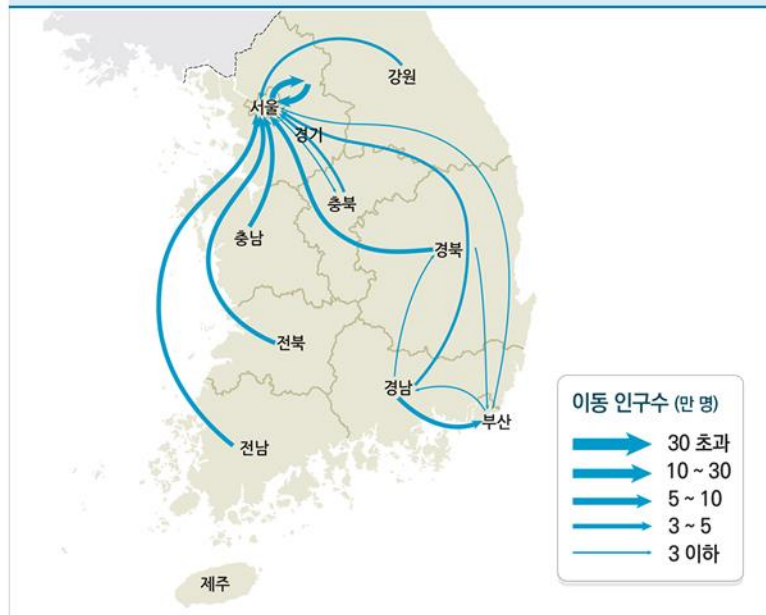
인구감소
위험의
현실화 우려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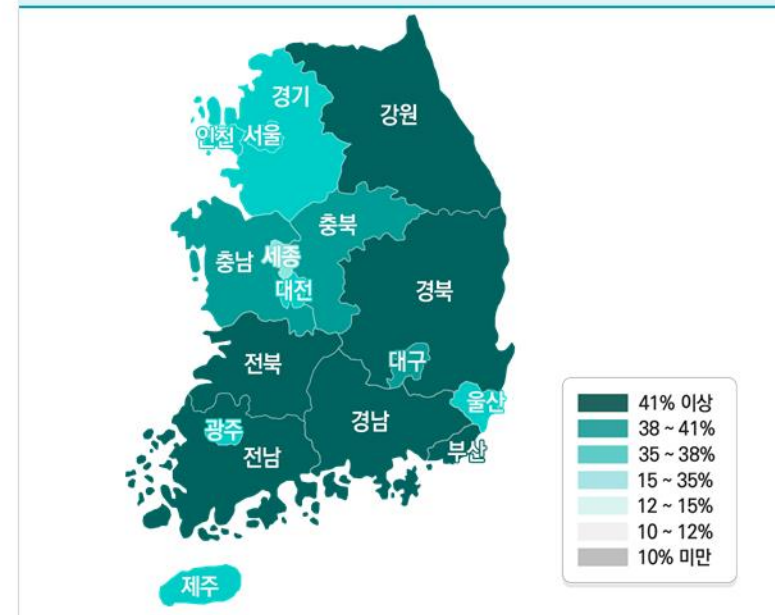
인구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구 이동 (2020)



2040년
지역의 고령화율
40% 초과 예상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2047)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02미만-소멸고위험지역<02-05미만-소멸위험진입 단계<05-1.0미만-주의단계<1.0~1.5미만-소멸위험 보통<1.5이상-소멸위험 매우 낮음



그간 정책의 한계



II 그간 정책의 한계



낙후지역 위주 지원

-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본질적 고민보다는 낙후지역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
- ➔ 접경지역, 서해5도, 섬 등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중심 지원



각 중앙부처 사업간 단절

- ✓ 지역의 인구감소는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국고보조사업별 기준이 상이하고 분산적으로 추진
- ➔ 지역 단위로 구분된 지원체계로 지방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연계 부족



시사점

부처별 · 사업별 **연계·협력**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 대응 필요

II 그간 정책의 한계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 ✓ 중앙의 필요에 따른 Top-Down식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특수성이 미반영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사업 추진
- ➔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 한계



단기간 성과에만 집착

- ✓ 정주민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별로 분산된 정책 추진(Zero-sum Game)
-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 계획 부족



시사점

지방 주도의 상향식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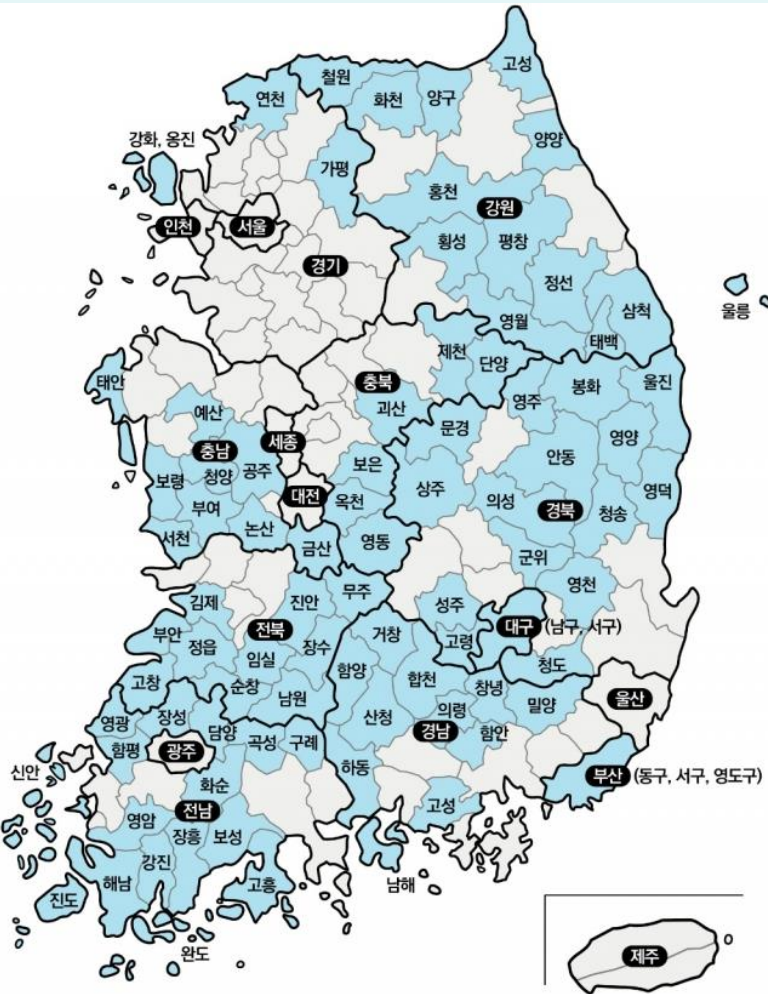
지방소멸 대응 대책





1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인구감소지수 산정

인구감소지수 산정 흐름

지표선정 및 표준화

최종지표(8개) 개별값을 변환해
표준화 (0~1값)

가중치 산정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 산출

지수화

가중치를 반영해 지표값 합산

최종지표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주요 내용 (시행 '23.1.1.)

- ☑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시·군·구 → 시·도 → 국가)
- ☑ (추진체계)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 설치**
- ☑ (협약)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 ☑ (생활권 연계·협력) 지자체 간 **생활권 설정, 시설 및 공동서비스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 방안 마련**
- ☑ (생활인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
- ☑ (특례) 청년 일자리 지원, 중장년 정착 지원, 보육여건 개선, 교육·의료·문화기반 확충, 외국인 체류 특례 등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특별법 내 인구감소지역 특례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에 행·재정 지원

교육

유·초·중·고 통합운영
지방교육교부금 지원
초·중·고 설립 인가 특례 등

의료

방문진료사업 지원
필수의료기관 비용 지원
거점의료기관 우선지원

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교통서비스 지원 등

문화

작은도서관 설치
학예사 운영 특례 등

외국인

비자 발급절차 및 체류
기간 상향 특례

유희시설

유희시설 활용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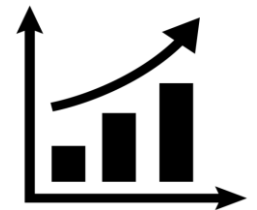
3 지방소멸대응기금

✓ 기금 도입 배경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목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22~'31)
-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22년은 7,500억원)
-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기금 운영 기본방향 : 목적성, 자율성, 경쟁

-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3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차등배분, 광역지원계정은 정액배분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 ✓ 89개 지역
- ✓ 기초계정의 95% 배분
- ✓ 최대한도 '22년 90억, '23년 120억

관심지역

- ✓ 18개 지역
- ✓ 기초계정의 5% 배분
- ✓ 최대한도 '22년 23억, '23년 30억



광역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

- ✓ 11개 지역
- ✓ 광역계정의 90% 배분
- ✓ 배분금액 '22년 378억(전남)~4억(경기)
'23년 505억(전남)~5억(경기)

그 외 시도

- ✓ 4개 지역
- ✓ 광역계정의 10% 배분
- ✓ 배분금액 '22년 14억(광주, 제주)~9억(대전, 울산)
'23년 18.75억(광주, 제주)~12.5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절차

투자계획 수립·제출(기초) → 계획 평가(평가단)
→ 지자체 협의·자문(심의위) → 계획 수정·제출(기초) → 의결
(조합)

절차

투자계획 수립·제출(광역) → 지자체 협의·자문(심의위) → 투자
계획 수정·제출(광역) → 의결(조합)

III 지방소멸 대응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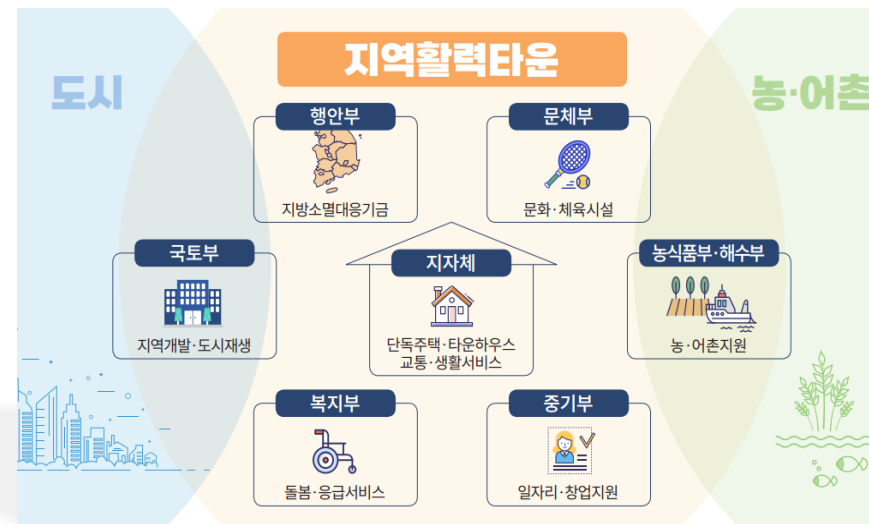
4 지방소멸대응기금 타 사업 연계

정주 여건 분야(예시)

-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

- 7개 지자체 시범 실시(7개 부처 협업, 개소당 약 200억원+α)

※ (예시) 주택·단지 조성 200억원(국토부), 주민 편의시설 50억원(행안부, 기금), 체육센터 30억원(문체부) 등



- 정주 여건 특례 제공(『인구감소지역법』)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노후주택 신축 비용 지원 등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4 지방소멸대응기금 타 사업 연계

일자리 여건 분야(예시)

- ✓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

※ 약 400억원+ α 규모(행안부 200, 중기부 200+ α)

- (예시) 지역 힐링푸드 산업 육성 : 스마트팜 가공시설 조성(행안부) + 먹거리 제품 개발 지원(중기부)

- ✓ 일자리 분야 특례 제공(『인구감소지역법』)

※ 중소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





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 제고

■ 제도 개선 및 연계협력 강화

- ❖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 기금 배분기준 개선
- ❖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5개년계획)과 기금사업과 연계를 통한 중장기적 지원
- ❖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우수사례 확산
- ❖ 기금과 타 사업간 연계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은퇴자·귀촌인 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원(7개 부처)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6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인구감소지역 지원사항

■ 재정 & 세제지원

- ✓ (보통교부세)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신설('22년 1조, '23년 2조 규모)
- ✓ (균형발전특별회계) 인구감소지역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율 상향**(5%p)
- ✓ (국고보조사업) 공모(53개 사업, 2.6조원) 시에 **가점부여**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
- ✓ (국세)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10년 100% + 2년 50%)
- ✓ (지방세) 인구감소지역 창업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50%)



■ 도입배경

- ❖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은 제로섬 게임
- ❖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 증가 및 거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개인 행태의 다변화
- ❖ 주민등록인구와 행정수요간 괴리로 인해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인구개념 도입 필요
- ❖ 특정지역에 주민등록은 없으나 학업, 근로, 관광 등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인구를 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Ⅲ 지방소멸 대응 대책



7 생활인구 활성화

■ 구성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월 1회,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 ❖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산정 및 활용

- ❖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고시(안) 마련 및 시범산정('23년)
- ❖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인구 산정('24년)
- ☞ 단순 정주인구 기반의 정책수립에서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

※ 예시) 노년층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실버타운, 병원 등 건립 지원, 학생 통학인구가 많은 지역은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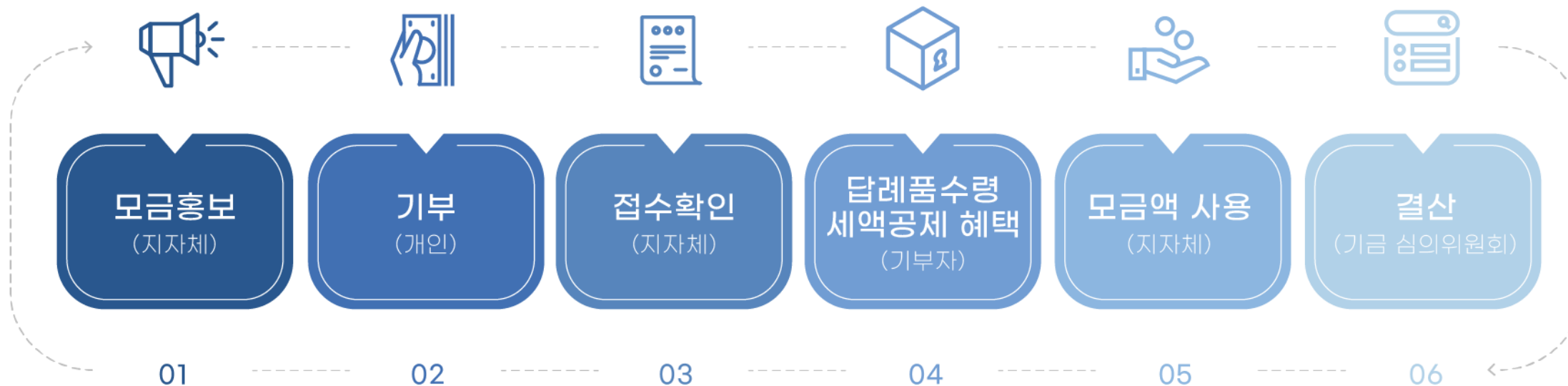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 법 제정('21.10月), 시행('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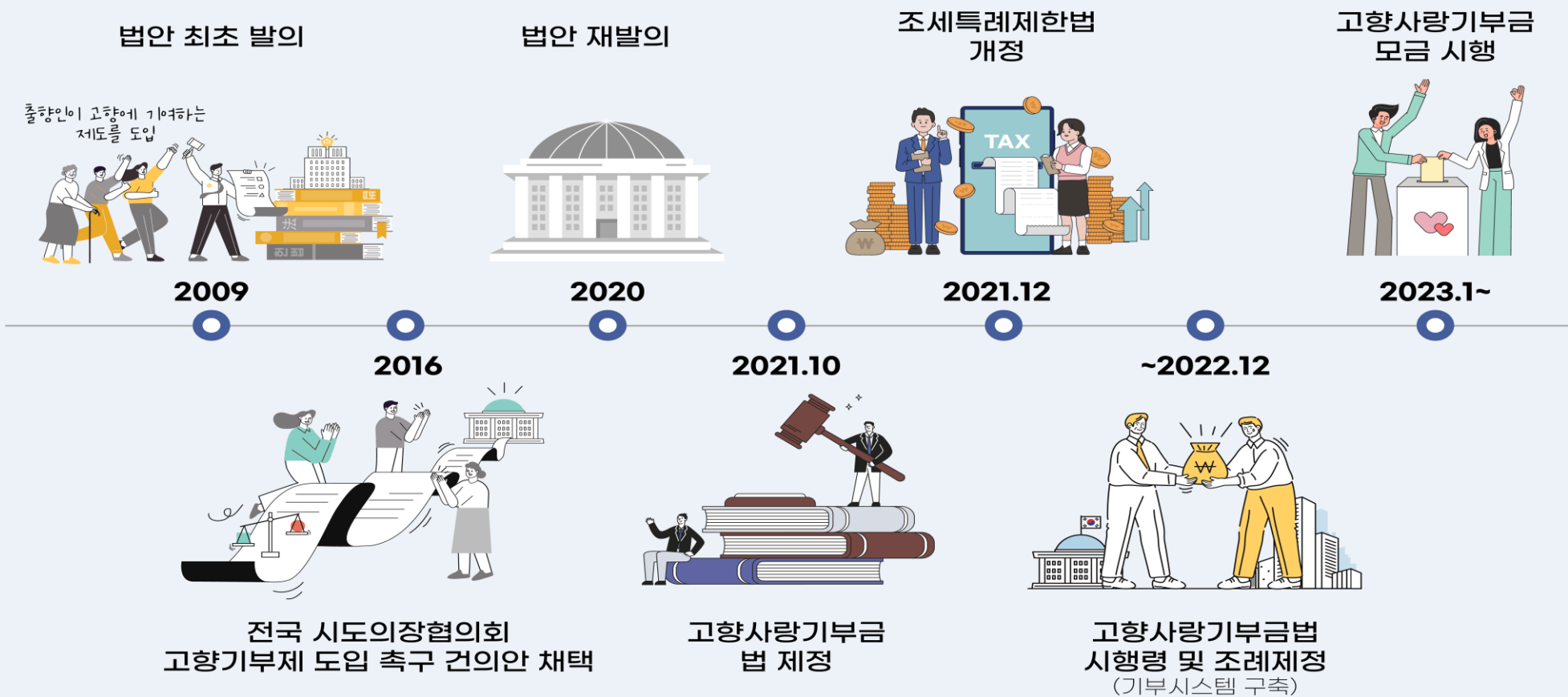
운영체계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추진경과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요내용

기부자 · 기부처

-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금액

기부액 한도 : **연간 500만원**

* 지방자치단체 합산

기부 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5,900개 지점)

기부 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기부





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요내용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	16.5%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답례품 제공

- ✓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30%** 한도내 답례품 제공
 - ✓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 ✓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 제외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유가증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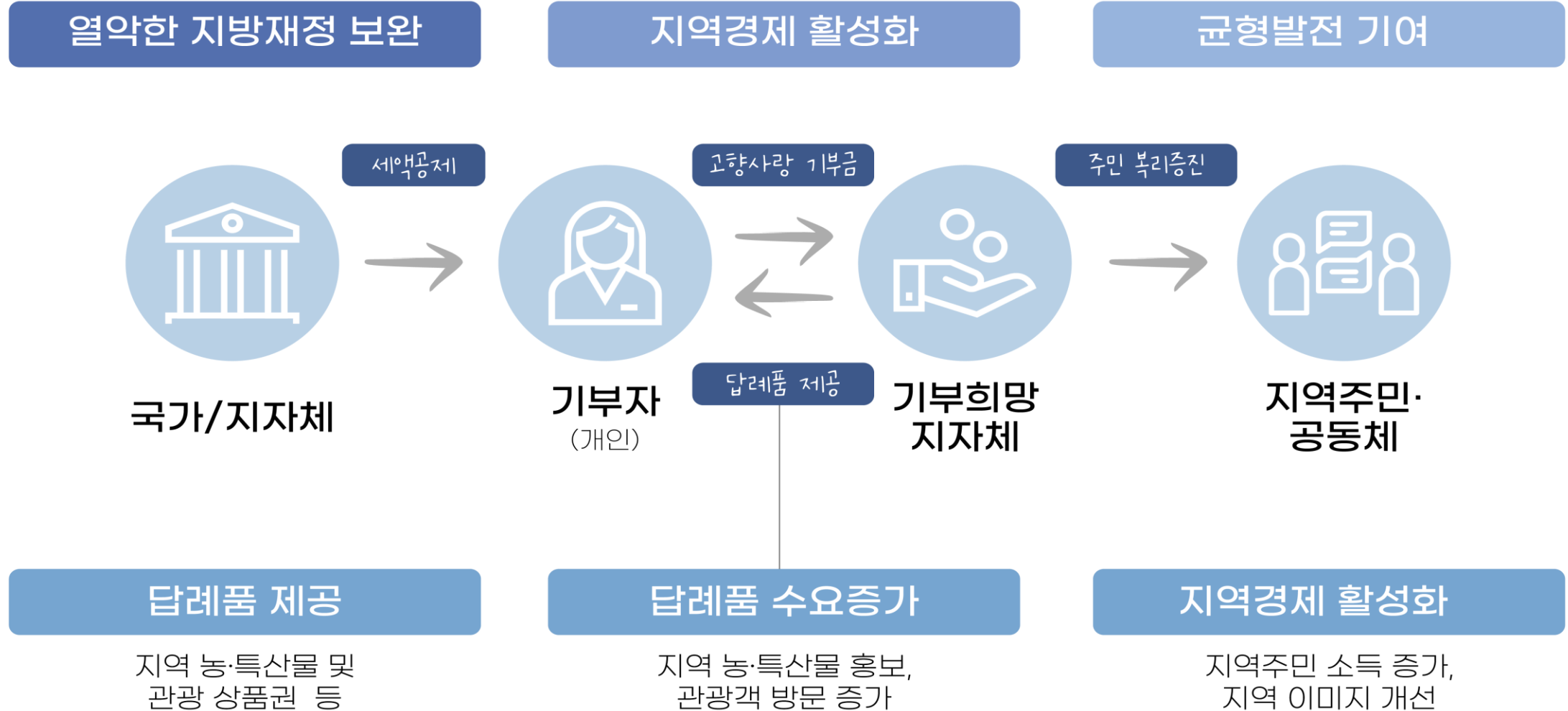
기금 사업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 청소년 보호 육성
- ✓ 문화 예술 보건 증진
-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3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대효과





4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 지원
- ❖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 지원
- ❖ 기부자가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시스템 개선**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대면창구 운영**
-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지정 및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5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답례품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기부자

관계인구

지방자치단체

생활인구 (방문·재방문)

감사합니다

